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A2BL (공공분양주택)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추천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선정·통보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청약 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 안내를 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대상자는 청약 신청일에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접수 및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 포함)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지지 아니하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자를 충분히 안내하고 재검증하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 상의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공급 내역

- 공급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1지구 A2BL
- 공급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3층~지상 23층, 총 15개동 931세대(공공분양주택 802세대, 민영주택 129세대),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입주 예정 : 2027년(정확한 일정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 시 확인)
- 분양 가격 : 미정(입주자모집공고 시 확정)
- 공급 대상

구분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세대별 계약면적(m ²)					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물량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공공분양 주택	074.9136A	74A	74.9136	22.3755	97.2891	51.3112	148.6003	20	3
	074.9805B	74B	74.9805	22.1383	97.1188	51.3570	148.4758	22	3
	084.9656A	84A	84.9656	25.2119	110.1775	58.1962	168.3737	342	52
	084.9819B	84B	84.9819	25.2620	110.2439	58.2074	168.4513	133	23
	084.9723C	84C	84.9723	25.2580	110.2303	58.2008	168.4311	75	8
	084.9715C1	84C1	84.9715	25.1265	110.0980	58.2003	168.2982	3	-
	084.9715C2	84C2	84.9715	25.1265	110.0980	58.2003	168.2982	4	-
	084.9884D	84D	84.9884	26.3559	111.3443	58.2118	169.5561	56	8
	084.9789E	84E	84.9789	25.0022	109.9811	58.2053	168.1864	132	23
	084.9772E1	84E1	84.9772	25.0273	110.0045	58.2041	168.2086	6	-
	084.9916E2	84E2	84.9916	25.0304	110.0220	58.2140	168.2360	5	-
	084.8606T1	84T1	84.8606	28.3995	113.2601	58.1243	171.3844	2	-
084.9530T2	84T2	84.9530	25.2131	110.1661	58.1875	168.3536	2	-	
민영 주택	106.1326A	106A	106.1326	30.1972	136.3298	72.6943	209.0241	20	-
	106.1708B	106B	106.1708	30.4475	136.6183	72.7205	209.3387	73	-
	106.1512B1	106B1	106.1512	30.3772	136.5284	72.7070	209.2355	6	-
	106.1512B2	106B2	106.1512	30.3772	136.5284	72.7070	209.2355	5	-
	106.1708C	106C	106.1708	30.4475	136.6183	72.7205	209.3387	19	-
	106.1512C1	106C1	106.1512	30.3772	136.5284	72.7070	209.2355	2	-
	106.1512C2	106C2	106.1512	30.3772	136.5284	72.7070	209.2355	2	-
106.9034T	106T	106.9034	34.7772	141.6806	73.2222	214.9028	2	-	
공급 세대 합계								931	120

※ 상기 면적 및 주택형은 현재 인허가중인 사항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시 면적과 주택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 세대

구분	74A		74B		84A		84B		84C		84D		84E		합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국가유공자	1	(5)	1	(5)	16	(80)	8	(40)	3	(15)	3	(15)	8	(40)	40	(200)	
장애인	전라남도	1	(5)	-	-	3	(15)	1	(5)	-	-	1	(5)	1	(5)	7	(35)
	광주광역시	-	-	-	-	2	(10)	-	-	-	-	-	-	-	-	2	(10)
장기복무제대군인	-	-	1	(5)	4	(20)	2	(10)	1	(5)	-	-	1	(5)	9	(45)	
10년 이상 복무군인	1	(5)	-	-	5	(25)	2	(10)	1	(5)	-	-	2	(10)	11	(55)	
중소기업근로자	-	-	1	(5)	14	(70)	6	(30)	3	(15)	2	(10)	7	(35)	33	(165)	
우수기능인	-	-	-	-	1	(5)	-	-	-	-	-	-	1	(5)	2	(10)	
우수선수	-	-	-	-	1	(5)	1	(5)	-	-	-	-	-	-	2	(10)	
의사상자	-	-	-	-	2	(10)	1	(5)	-	-	-	-	1	(5)	4	(20)	
다문화가족	-	-	-	-	2	(10)	1	(5)	-	-	1	(5)	-	-	4	(20)	
대한민국체육공자	-	-	-	-	2	(10)	1	(5)	-	-	1	(5)	-	-	4	(20)	
북한이탈주민	-	-	-	-	-	-	-	-	-	-	-	-	1	(5)	1	(5)	
납북피해자	-	-	-	-	-	-	-	-	-	-	-	-	1	(5)	1	(5)	
합계	3	(15)	3	(15)	52	(260)	23	(115)	8	(40)	8	(40)	23	(115)	120	(600)	

- ※ 상기 세대수는 현재 인허가 진행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시는 예비입주자 세대수입니다.
- ※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 배정된 세대수에 한하여 가능하며, 각 주택형별 배정세대수의 500%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m²)를 평으로 환산하는방법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특별공급 공급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예정)일	2024년 04월 05일(금) 예정	주요 일간지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건본주택 개관(예정)일	2024년 04월 05일(금) 예정	-
특별공급 신청(예정)일	2024년 04월 15일(월)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일	2024년 04월 24일(수)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

- ※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10:00~14:00) 단, 건본주택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필요서류 건본주택 별도 문의)

표. 신청 자격

구분	내용						
신청자격	<p>※ 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의거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추천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로 선정·통보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 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확정자 또는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 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table border="1" data-bbox="212 510 1433 667"> <thead> <tr> <th>추천대상자</th> <th>입주자저축 구비여부</th> </tr> </thead> <tbody> <tr> <td>국가유공자, 장애인</td> <td>필요없음</td> </tr> <tr> <td>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우수기능인·우수선수,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td> <td>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td> </tr> </tbody> </table> <p>※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 및 분양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한다. * 단,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p>※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단,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제외) 신청자 또는 세대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분.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 제53조 각 호에 해당하는자(노부모부양특별공급의 경우 제외)는 제외)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입주자저축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필요없음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우수기능인·우수선수,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필요없음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우수기능인·우수선수,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동별, 층별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주택형별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 당첨 동·호수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동·호수 배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비 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같은 주택형의 다른 유형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은 당첨자 발표일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개별 조회 가능합니다.(개별통지 불가, 본인 확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①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③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가 있는 경우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Ⅲ. 유 의 사 항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라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법」에 의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받는 주택입니다. 이에 따라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하여 **재당첨 제한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전매제한기간 1년이 적용되며,** 「주택법」 제57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규정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관련 법령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제1항제4호)	재당첨제한	10년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전매제한	1년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거주의무	-	「주택법」 제57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 재당첨 제한 사례 참고 사항

※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제한됩니다.

예시 1. 종전 규제지역 내 공급한 주택의 당첨된 사례

- 2021년 1월 여수시(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한 민영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7년간(2028년 1월)까지 재당첨 제한 적용
- 2021년 3월 여수시(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한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0년간(2031년 1월)까지 재당첨 제한 적용
- 2021년 6월 서울특별시(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한 민영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0년간(2031년 6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22년 5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한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0년간(2032년 5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21년 7월 광주광역시(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한 민영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7년간(2028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적용

예시 2.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이전에 당첨된 사례로서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

- 2015년 6월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한 85㎡ 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0년 6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4년 9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공급한 85㎡ 초과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년간(2015년 9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7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한 85㎡ 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1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85㎡ 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아남)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재당첨 제한 기간 없음
- 2017년 7월 부산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 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3년간(2020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3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청약 제한사항 확인]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인)으로 공급합니다.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부적격 처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대상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만, 기관추천 예비대상자의 경우 본인이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홀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분양사무소)에 통보한 자 또는 해당기관의 확인서(추천서)를 발급 받은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특별공급 신청을 하여야 함.**
[신청시 주택형 변경 불가,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제외 및 계약 불가]
* 예비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 신청을 하여야 예비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청약 미신청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청약 접수 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사에서 정한 서류제출일(추후 안내 예정)에 기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신청 주택형 변경 등)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등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추후 공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를 필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오니 이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하여 신청자격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 결과 부적격자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취소,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며, 이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 신청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청약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미숙지하고 청약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수는 관련법령에 의거 주택형 내에서 층별,향별,타입별,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업무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추첨으로 결정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기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신청하실 주택형별 세부사항 등은 당사 사이버 주택전시관(<https://hillstate.co.kr/s/jukrim>)등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거하며, 안내문에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대표번호(☎ 1551-47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공급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4년 04월 05일(금) 공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시고,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당사 기본주택 및 인쇄제작물,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기타 자료

■ 위치도



※ 본 위치도, 교통로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에 기재된 거리, 교통, 면적, 개발계획 등과 관련된 내용 및 수치는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단지 설계 사항은 추후 완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죽림1지구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내용은 「전라남도 고시 제 2023-248호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승인,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을 근거로 한 내용이며, 추후 계획의 변동은 사업주체,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위 광역입지도에 표현된 현황, 개발 계획, 예정사항 등은 관계기관의 홈페이지 및 해당기관의 고시 등을 참조하여 작성된 것으로 사업계획 및 일정은 해당관청 및 사업주체의 사정에 의해 지연,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1551-4788
- 홈페이지 : <https://hillstate.co.kr/s/jukrim>